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·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 가능

- 1) 탐사·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 내 탐사·시추 결과 경제성이 입증될 것
- 2) 탐사·시추의 목적이 갱구의 입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굴진채굴일 것
- 3) 광물의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광업법」, 「산지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) ①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·시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것
2.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탐사·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에서 탐사·시추를 실시했을 것. 이 경우 탐사·시추한 광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탐사·시추하려는 광물과 동일해야 한다.
3. 제2호에 따른 탐사·시추 결과 경제성이 인정될 것. 이 경우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경제성을 판단받아야 한다.
4. 탐사·시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굴진채굴일 것. 이 경우 갱구의 입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.
5. 탐사·시추가 완료된 후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것

6.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. 다만, 탐사
· 시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작업장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할
수 있다.

② 「광업법」 제38조에 따라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 제9조
제2항제1호 및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
2. 제1항제2호에 따른 탐사·시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실적 보
고서
3.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
4. 탐사·시추계획서
5. 작업공간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작업구역이 표시된
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
도 등
6. 탐사·시추시설의 설치로 훼손된 산림의 산림복원사업계획서. 이
경우 복원에 대한 공중·공법, 전문가 활용계획, 사업 모니터링 및
평가계획, 그 밖에 복원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
포함되어야 한다.

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③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위해 법 제9조제
2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산지관리법」 제22
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조의2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)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·시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1.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것 2.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탐사·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에서 탐사·시추를 실시했을 것. 이 경우 탐사·시추한 광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탐사·시추하려는 광물과 동일해야 한다. 3. 제2호에 따른 탐사·시추 결과 경제성이 인정될 것. 이 경

우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경제성을 판단받아야 한다.

4. 탐사·시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굴진 채굴일 것. 이 경우 갱구의 입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.

5. 탐사·시추가 완료된 후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것

6.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. 다만,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작업장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「광업법」 제38조에 따라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

2. 제1항제2호에 따른 탐사·시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실적 보고서

3.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

4. 탐사·시추계획서

5. 작업공간의 시설계획과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작업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

6. 탐사·시추시설의 설치로 훼손된 산림의 산림복원사업계획서. 이 경우 복원에 대한 공중·공법, 전문가 활용계획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, 그 밖에 복원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③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위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31